

부속서 4-나

원산지증명서

대한민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본(제2부분/제3부분/제4부분)

1. 수출자 (이름, 주소, 국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참조번호: 대한민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신고 및 증명 비용) 발행국_____ (국가)_____		
2. 생산자 (이름, 주소, 국가)(선택)				
3. 수입자(이름, 주소, 국가)(선택)		5. 담당자란		
4. 운송 수단 및 경로(선택) 출항일: 선명/편명 등: 적출항:		6. 비고		
7. HS번호(6단위)	8. 수량을 포함한 상품명세	9. 총중량 및 가격(FOB)	10. 원산지 기준	11. 송장번호 및 일자
12. 수출자 신고 아래 서명자는,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이며 모든 물품은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국가) 대한민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고 다음 국가로 수출되었음을 신고합니다.(수입국) 장소, 일자, 서명권자의 서명		13. 증명 수행한 검사를 기초로 수출자의 신고가 사실임을 증명함 장소, 날짜, 서명 및 발급기관의 관인		
14. <input type="checkbox"/> 제3국 송장(이름, 주소, 국가)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을 위한 지침

1. 대한민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KINCEPA)에 의한 특혜관세의 목적상, 이 서식을 수용한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인도이다.
2. **조건** : KINCEPA의 특혜관세 대우를 받기 위하여는 상기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송부된 상품은, 가. 수입당사국의 양허받을 자격이 있는 품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KINCEPA의 제3장(원산지 규정)의 제3.15조(직접운송)에 따른 운송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 KINCEPA의 제3장(원산지 규정)의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원산지 기준** :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상품에 대하여 수출자는 이 원산지증명서 제10란에 해당 원산지 기준을 아래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원산지 기준	제10란에 기입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된 상품	"WO"
(나) KINCEPA 제3장(원산지 규정)의 제3.4조제1항나호를 충족하는 상품	"CTSH + RVC 35%"
(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 세번변경 - 역내가치포함비율 - 세번변경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 세번변경 + 역내가치포함비율 - 특정공정 - 기타	"CC / CTH / CTSH" 원산지 충족을 위해 필요한 "RVC X%" 예: "RVC 35%" "CC / CTH / CTSH" 또는 RVC X% "CC / CTH / CTSH" + "RVC X%" "SP" "Others"
(라) KINCEPA 제3장(원산지 규정)의 제3.14조를 충족하는 상품	"OP"

4. **각 물품이 요건을 충족할 것** : 운송되는 모든 상품은 각 개별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특히 크기가 다른 유사한 물품 또는 예비부품을 송부하는 때에도 그러하다.
5. **품명** : 상품의 명세서에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상품을 식별 가능하도록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6.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는 상품의 6단위로 한다.
7. **담당자 기재란** :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특혜관세대우 부여 여부를 원산지증명서의 제5란에 표시한다.
8. **비고** : 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하는 경우, 제6란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인증된 진본일 경우, 제6란에 “진정등본”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9. **제3국 송장발행** : 제3국의 운영인이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제3국 송장”란에 (√)로 표시하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 또는 운영인의 이름·주소 및 국가 등의 정보를 제14란에 기재한다.

주 : 이 지침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조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뒷면에 복사되거나 인쇄될 필요는 없다.